

5. 보건·복지·여성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
			관계부서
독립유공자 위문금	신 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독립유공자 위문금 신설 - 지급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유족 - 지급시기 : 3.1절, 8.15광복절 - 지급금액 : 20만원 	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’19. 1. 1.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2)
참전명예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전명예수당 年 12만원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- 年 12만원 → 年 15만원(3만원↑) 	경기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’19. 1. 1.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2)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등 지원	신 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, 명절위로금 지원 - 특별위로금 : 생애 1회(의사자 30백만원, 의상자 1백만원~15백만원) - 수당 : 등급별 4만원~10만원 - 명절위문금 : 회당 10만원 - 지원시기 : 매월 25일 	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(’18. 10월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2)
애국지사 「경기광복 유공연금」 지원	신 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 예우금 지원 - 지원 액 : 1인당 매월 100만원씩 - 지원시기 : 매월 25일 	경기도 복지 정책과-22858 (’18. 12월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2)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(청년배당)	신 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지급(분기별25만원) 	경기도 청년 배당 지급 조례 (’19. 11. 13.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3)
기초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연금액 - 소득하위 70%이하 어르신 월25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연금액 - 소득하위 20%이하 어르신 월30만원 - 소득하위 20%초과 70%이하 어르신 월25만원 	기초연금법 제5조 (’19. 4월 예정)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(8082-5713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
			관계부서
노인일자리 신규유형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익활동, 시장형,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60~66시간 - 월 54~59.4만원 지원 - 아동·청소년·장애인·노인시설 지원 	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 안내 ('19. 1. 1.)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(8082-5712)
긴급복지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5항 위기사유 「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」 • 일반재산 기준 : 8,5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5항 위기사유 추가 「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」 • 일반재산 기준 : 11,800만원 	긴급복지 지원법 ('19. 1. 1.) 사회복지과 복지자원 개발팀 (8082-5792)
부양의무자 기준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수급자 가구 : 만 65세 이상 도래자, 등록 장애인 1~3급을 포함한 가구 ②부양의무자가구 : 기초연금 수급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☞ 위 두 조건(①,②)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(생계·의료급여)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(생계급여) ③수급(신청)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(생계·의료급여) ☞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 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('19. 1. 1.)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 (8082-5762)
맞춤형 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중위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1,672,105원 - 2인가구 : 2,847,097원 - 3인가구 : 3,683,150원 - 4인가구 : 4,519,202원 • 생계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의 3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504,632원 - 2인가구 : 854,129원 - 3인가구 : 1,104,945원 - 4인가구 : 1,355,761원 • 의료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의 4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668,842원 - 2인가구 : 1,138,839원 - 3인가구 : 1,473,260원 - 4인가구 : 1,807,681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중위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1,707,008원 - 2인가구 : 2,906,528원 - 3인가구 : 3,760,032원 - 4인가구 : 4,613,536원 • 생계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의 3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512,102원 - 2인가구 : 871,958원 - 3인가구 : 1,128,010원 - 4인가구 : 1,384,061원 • 의료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의 4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682,803원 - 2인가구 : 1,162,611원 - 3인가구 : 1,504,013원 - 4인가구 : 1,845,414원 ☞ 전년대비 2.08% 인상 	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4호 ('18. 7. 24.)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 (8082-5762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관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활참여자 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활참여자 인건비(원/인·일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시장진입형</th> <th>사회 서비스형</th> <th>근로유지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급액계</td> <td>42,210</td> <td>38,190</td> <td>27,110</td> </tr> <tr> <td>급여단가</td> <td>38,910</td> <td>34,890</td> <td>23,810</td> </tr> <tr> <td>실 비</td> <td>3,300</td> <td>3,300</td> <td>3,300</td> </tr> <tr> <td>표준소득액(월)</td> <td>1,011,660</td> <td>907,140</td> <td>619,060</td> </tr> <tr> <td>비 고</td> <td>1일 8시간, 주 5일</td> <td>1일 5시간, 주 5일</td> <td>1일 5시간, 주 5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시장진입형	사회 서비스형	근로유지형	지급액계	42,210	38,190	27,110	급여단가	38,910	34,890	23,810	실 비	3,300	3,300	3,300	표준소득액(월)	1,011,660	907,140	619,060	비 고	1일 8시간, 주 5일	1일 5시간, 주 5일	1일 5시간, 주 5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활참여자 인건비(원/인·일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시장진입형</th> <th>사회 서비스형</th> <th>근로유지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급액계</td> <td>53,440</td> <td>46,790</td> <td>27,970</td> </tr> <tr> <td>급여단가</td> <td>49,440</td> <td>42,790</td> <td>23,970</td> </tr> <tr> <td>실 비</td> <td>4,000</td> <td>4,000</td> <td>4,000</td> </tr> <tr> <td>표준소득액(월)</td> <td>1,285,440</td> <td>1,112,540</td> <td>623,220</td> </tr> <tr> <td>비 고</td> <td>1일 8시간, 주 5일</td> <td>1일 5시간, 주 5일</td> <td>1일 5시간, 주 5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시장진입형	사회 서비스형	근로유지형	지급액계	53,440	46,790	27,970	급여단가	49,440	42,790	23,970	실 비	4,000	4,000	4,000	표준소득액(월)	1,285,440	1,112,540	623,220	비 고	1일 8시간, 주 5일	1일 5시간, 주 5일	1일 5시간, 주 5일	<p>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-32688 (’19. 1. 1.)</p> <p>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 (8082-5764)</p>
	구 분	시장진입형	사회 서비스형	근로유지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급액계	42,210	38,190	27,1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급여단가	38,910	34,890	23,8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 비	3,300	3,300	3,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표준소득액(월)	1,011,660	907,140	619,0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고	1일 8시간, 주 5일	1일 5시간, 주 5일	1일 5시간, 주 5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시장진입형	사회 서비스형	근로유지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급액계	53,440	46,790	27,9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급여단가	49,440	42,790	23,9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실 비	4,000	4,000	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표준소득액(월)	1,285,440	1,112,540	623,2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고	1일 8시간, 주 5일	1일 5시간, 주 5일	1일 5시간, 주 5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애인 등록사항 변경 (장애인등급제 폐지 → 장애정도로 변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등급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학적 심사 후 장애등급(1~6급) 결정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장애등급’ 용어가 ‘장애정도’로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 정도에 따라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현행 1급~3급)’ 및 ‘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(현행 4급~6급)’으로 구분 등급에 따른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후 지원 * 기존 대상자는 별도 장애정도 판정, 조사 불필요 	<p>장애인복지법 제32조 (’19. 7. 1.)</p> <p>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 (8082-5731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 한부모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8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 한부모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5만원 	<p>여성가족부 고시 (’19. 1월 예정)</p> <p>여성보육과 여성가족친화팀 (8082-5804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: 시간당 7,800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 600시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: 시간당 9,650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 720시간 	<p>2019년 아이돌봄지원 사업 안내 지침 (’19. 1. 1.)</p> <p>여성보육과 여성가족친화팀 (8082-5804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출산장려금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 주민등록 1개월 이전부터 거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둘째아/1회/200천원 셋째아/1회/9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 주민등록 1개월 이전부터 거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둘째아/1회/500천원 셋째아/1회/1,000천원 	<p>양주시 출산 장려금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(’19. 1. 1.)</p> <p>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(8082-5832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
			관계부서
아동수당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만 0~5세 아동 - 조건 : 소득수준 하위 90%이하 - 금액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만 0~5세 아동 - 조건 : 소득수준 무관 - 금액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* 기존 소득인정액 초과 제외자는 시행일에 1월분부터 소급 지급 	아동수당법 ('19. 4월예정)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 (8082-5811)
출생신고 시 규격봉투 무료 지급	신 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우리시로 출생 신고 시 출생아 1인당 1회 1,000리터 (20리터, 50매)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 	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5조 ('19. 1. 1.)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(8082-6903)
건강진단결과서 (보건증) 온라인 발급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온라인 발급 시 최초 발급만 가능 • 공공보건포털(http://www.g-health.kr) 사이트에서만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온라인 발급 시 최초 발급 및 재발급 가능 (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없음) • 공공보건포털(http://www.g-health.kr) 또는 민원24(http://minwon.go.kr)에서 발급가능 	식품위생법 제40조 ('18. 12. 13.)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 (8082-7117)
건강진단결과서 (구보건증) 발급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 발급 시 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지 발급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 발급 시 개인동의 전제로 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지 발급 가능 	전자정부법 제9조제6항 ('18. 12. 19.)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 (8082-7117)
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	신 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2019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• 수행기관 : 관내 치과 병·의원 • 지원내용 : 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예방 진료 등 	경기도초등학생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 ('19. 1. 1.) 보건사업과 구강보건팀 (8082-7161)
산후조리비 지원사업	신 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'19년 신생아로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출산 가정(소득무관) •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- 지역화폐(5월경) 시작 시 소급적용 	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조례 ('19. 1. 1.)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(8082-7171)
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(연1회 무료 접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후 6개월~만12세 이하 아동 - 만65세 이상 어르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(연1회 무료 접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대상 변동 없음 - 임신부 추가 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('19. 1. 1.)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(8082-7171)